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9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이학영 · 이수진
김선민 · 김 윤 · 박용갑
서영석 · 전진숙 · 조계원
권칠승 · 홍기원 · 허종식
이재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,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.

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(원내처방)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11조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마약류 취급의 보고) ① ~ ③ (생 략)	제11조(마약류 취급의 보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 업자가 조제·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 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: 해당 동물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 번호</u>	2. <삭 제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⑤·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